

# 재해에 대비한 시의 시책과 지원제도

## 시유건축물의 내진진단·개수

피난소가 되는 학교나 시민체육관 등 방재상 중요한 공공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등의 내진진단 개수공사를 실시합니다.



## 비상용물자의 비축

피난생활에 필요한 비상용 물자를 비축합니다.

### 비상용 물자

비상용 음료수 용기/재해용 비축수/음료수/식량 /고령자를 위한 음식/분유/포유병/모포/기저귀/생리용품/구급용품/간이 화장실

## 구조용 기자재의 배치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기자재를 전 시립초등학교, 파출소, 소방분단에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 구조용 기자재

로프/삼/곡괭이/끌/톱/유압잭/망치/펜치

## 초동체제의 정비

재해 시에는 시직원의 근무시간 이외라도 피해조사나 응급대책을 실시하는 직원의 비상배치를 실시합니다.

### 지진 발생시

●진도 5약 : 약 650명의 직원이 출동합니다.  
●진도 5강 이상 : 전직원이 출동합니다.

### 풍수해 발생시

경보 발령 시 직원이 출근하여 재해대응 부서를 중심으로 시내경비와 응급/복구대책 준비로 들어갑니다.

## 《긴급방재요원》

사전에 지명된 약 200명의 직원이 전시립초등학교등에 모여 피해조사등을 실시합니다.

## 시의 지원제도

### 가구 등의 전도방지기구 설치비용의 보조

자세한 것은

각 문의처로

대상세대	보조한도액		보조방법	문의처
	시민세 비과세세대	생활보호 수급세대		
시민세 비과세세대 또는, 생활보호 수급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세대로서, 개호보험에서 지원·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고령자가 있는 세대	설치비 5,000엔 한도로 보조	보조가 결정된 후, 시가 지정하는 업자가 설치를 합니다. (옷장이나 식기선반, 책장, 텔레비전, 냉장고 등 합계 5대까지)	○ 복지부 고령복지실  ○ 복지부 장애복지실
	(2) 중도장애자만 있는 세대	설치비 5,000엔과 재료비 5,000엔 한도로 보조		
	(3) 중도장애자와 65세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된 세대	설치비 5,000엔과 재료비 5,000엔 한도로 보조		

### 내진진단이나 내진개수설계, 개수공사의 보조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부 개발심사실

#### 내진 진단 보조 제도 대상▶개인·법인·관리 조합

대상 건축물	보조액·한도액	
단독 주택 연립 주택 공동 주택 (분양 아파트 제외)	목조	내진 진단 비용에서 5,000엔을 공제한 금액과 5만 엔×주거 호수 중에서 적은 금액을 보조하고, 목조 부분의 연면적×1,100엔을 한도로 정한다.
	비목조	내진 진단 비용의 1/2을 보조하고, 100만 엔을 한도로 정한다.
병원, 슈퍼마켓, 극장 등 특정 건축물 (주택 제외)	내진 진단 비용의 1/2로 보조하고, 100만 엔을 한도로 정한다.	

#### 내진 설계 대상▶개인

대상 건축물	보조액·한도액
건축 기준법에 적합한 민간 목조 주택. (임대 제외)	내진 설계에 드는 비용의 7/10을 보조하고, 10만 엔을 한도로 정한다.

#### 내진 개수 대상▶개인

대상 건축물	보조액·한도액
건축 기준법에 적합한 민간 목조 주택.	최대 70만 엔(특정 세대는 90만 엔), 제거 공사 40만 엔

#### 분양 아파트 내진화 보조 제도 대상▶관리 조합

대상 건축물	보조액·한도액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인 내화·준내화 구조의 분양 아파트	내진 진단	내진 진단에 든 비용의 2/3를 보조하고, 200만 엔을 한도로 정한다.
	내진 설계	내진 설계에 든 비용의 2/3를 보조하고, 300만 엔을 한도로 정한다.
	내진 개수	내진 개수 비용의 23%를 보조하고, 2,800만 엔을 한도로 정한다.

#### 위험 블록담 등 철거 보조 대상▶개인·법인·관리 조합

대상 블록담	보조액·한도액
도로 등에 면한 위험 블록담 가운데 도로 기준 높이가 60cm를 넘는 것	철거비의 4/5와 15,000엔/m 중에서 적은 액수를 보조하고, 40만 엔을 한도로 정한다.

※㎡당 한도액 있음.